

#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시장)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
서울특별시 고시 제21호(1982.1.19.)로 결정된 양천구 신정동 296-69번지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시장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결정(폐지) 고시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2026년 5월 7일  
양 천 구 청 장

## 1.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(안) 조서

### 가. 도시계획시설(시장) 변경 결정(폐지) 조서

구 분	시설명	위 치	면적(m <sup>2</sup> )			최초 결정일	비고
			기정	변경	변경 후		
폐 지	시 장	신정2동 296-69번지	2,800	감) 2,800	-	서고제21호 1982.1.19.	-

※ 공공기여 : 대지 내 공공공지(주민센터, 140.86㎡) 조성(변경 시 「도시계획시설 폐지·복합화에 따른 공공기여 기준안 개선」에 따라 해제면적의 5% 이상 공공기여 비율 준용)

- 도시계획시설(시장) 폐지 제안 시 제시된 공공기여계획 반영하여 준공 전 기부채납 완료할 것, 미이행 시 준공 승인 거부 및 임시 사용승인 취소 등 행정처분의 직권 취소 또는 환원 조치될 수 있음

### 나. 도시계획시설(시장) 변경 결정(폐지) 사유서

시설명	결정내용	결정사유
시장	◦ 시장 폐지 - 면적: 2,800㎡	◦ 유통환경 변화에 따른 시장 유지 필요성 저하 및 효율적 토지이용을 위한 시설 폐지

## 2. 관계도면 : 붙임 참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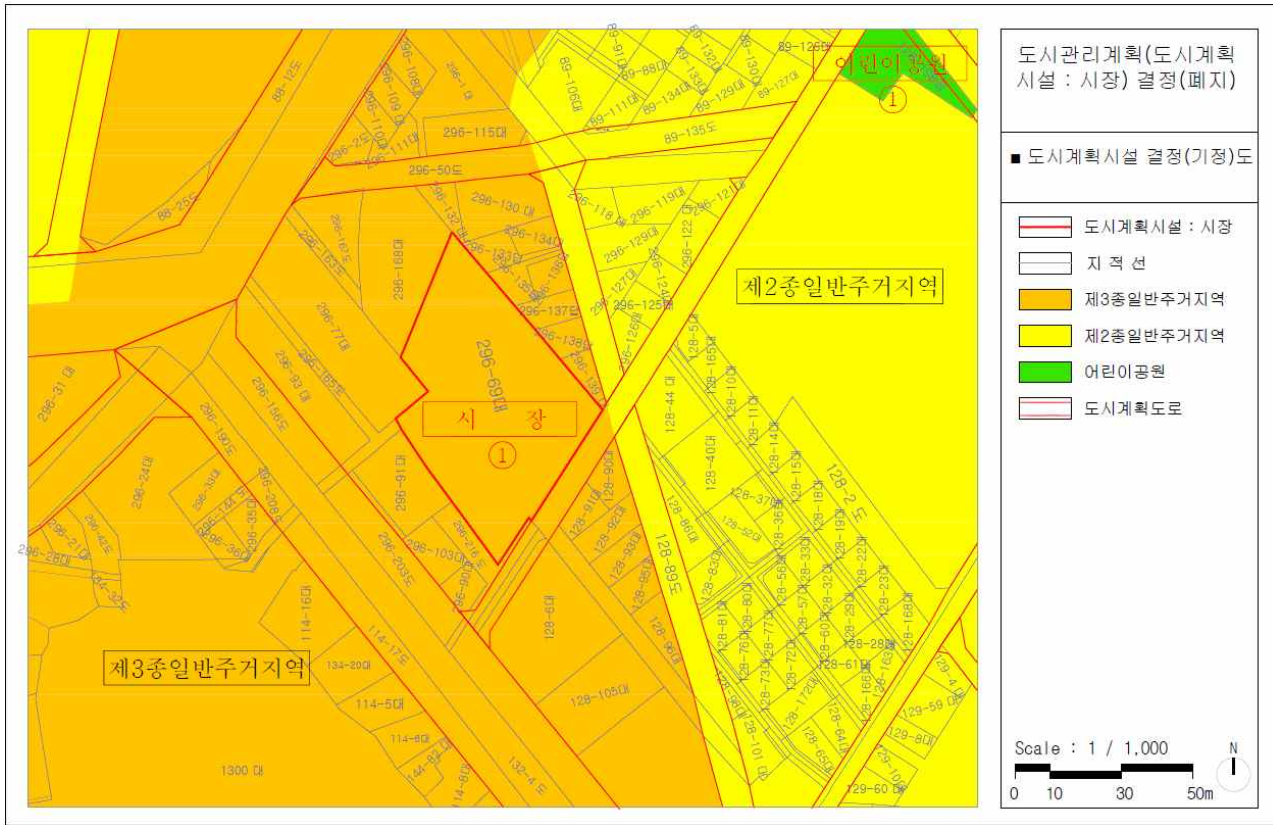
※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및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.

## 3. 열람장소: 양천구 도시계획과(☎02-2620-3504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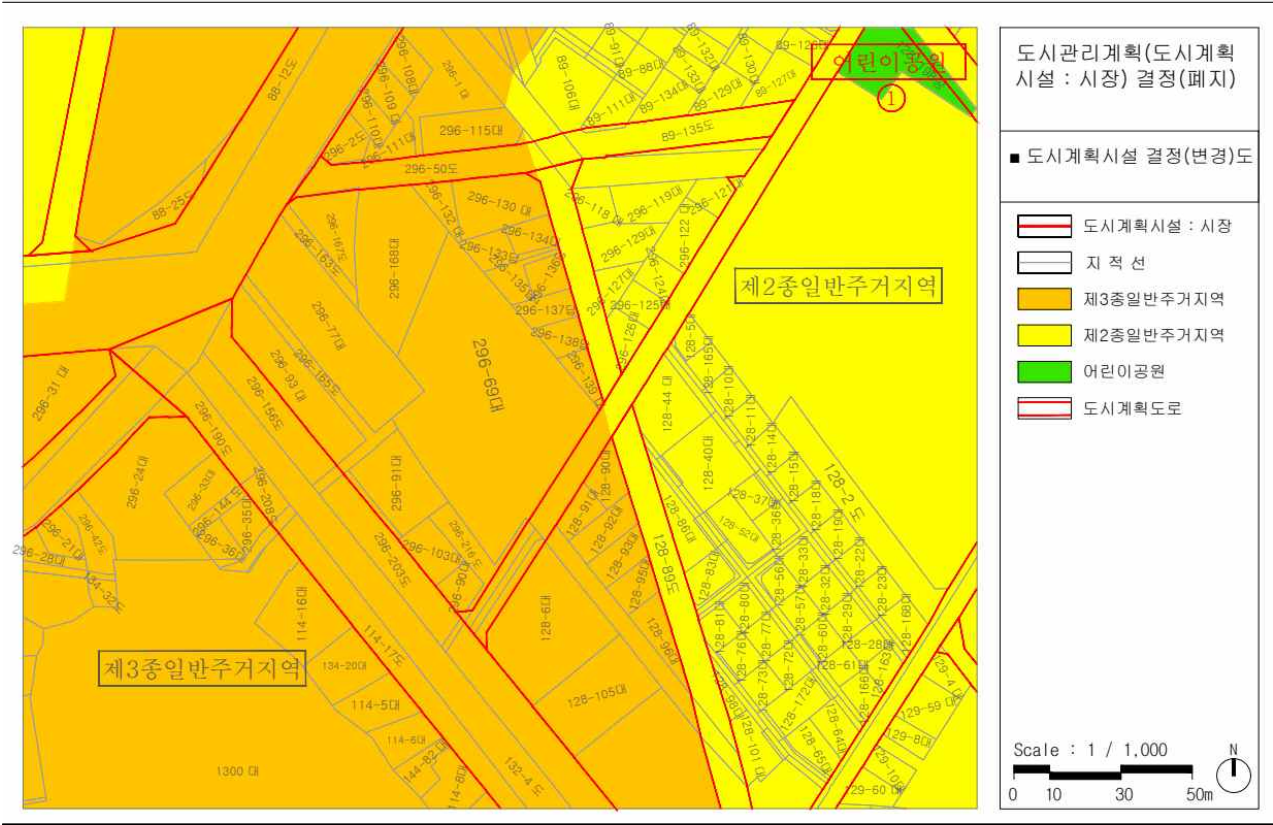
※ 고시문 및 지형도면 등은 서울 도시계획 포털(<http://urban.seoul.go.kr>) 및 토지이음(<http://www.eum.go.kr>)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# [도시계획시설(시장) 변경 결정(폐지) 지형도면]

## 도시계획시설 결정(기정)도



## 도시계획시설 결정(변경)도



※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및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.